

1982

통 계 조 사 지 침

인 구 동 태 표 본 조 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차 례

I. 조사개요	3
1. 조사목적	3
2. 실사사항	3
3. 조사대상	3
4. 조사시기	3
5. 조사방법	4
II. 기본자료의 정리	5
1. 조사구요도의 보완	5
2. 가구표 작성	8
3. 변동보고서 작성	23
4. 가구표 보완	33
5. 가구명부 보완	39
6. 변동사항 종합표 기입	42
III. 조사표 작성 및 면접요령	43
1. 주의사항	43
2. 면접방법 및 조사표 기입요령	43
3.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60

I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인구동태표본조사는 조사구내에서 발생하는 출생, 사망 및 인구 이동에 관한 인구동태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 1)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단기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의한 정태인구를 추정하며
- 2) 국민의 생명표작성, 사망원인분석, 간접출산력 측정 및 가족계획실적의 평가자료등 보건위생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 3) 기타경제, 사회, 후생, 교육등 광범한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실사사항

가. 가구표 작성

나. 인구동태조사표작성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다. 변동보고서 작성

3. 조사대상

표본조사구내에 상주하는 모든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4. 조사시기

매월 15일이 포함된 다음 1주일동안에 조사한다.

5.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기간은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로 한다. (지금까지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였음) 그러나 일자의 기산에서 오는 착오를 없애기 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동태사상은 전월 1일부터 조사일자까지 절의하여 파악하되 조사대상기간내의 동태사상만을 보고한다. 단, 1월분조사(2월실시)는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동태사상을 조사한다.

6. 조사방법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기입하는 면접식 타계조사 방법에 의한다.

Ⅱ . 기 본 자 료 의 정 리

1. 조사구요도의 보완

조사구는 조사원이 인구동태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계조사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을 말하며 조사구요도는 이 조사구의 경계선 및 각종 지형지물(즉 산, 능선, 하천, 교량, 논, 밭, 도로, 제방, 전주 각종 건축물등)의 분포상태가 표시된 청사진을 말한다. 이 조사구요도는 측량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수도 있다. 따라서 배부받은 조사구요도를 다음과 같은 순서와 요령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가. 경계선의 확인

조사구요도에는 그 경계선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조사구요도와 가구표를 가지고 경계선을 따라 실지로 답사하여 이를 확인하면서 누가 보아도 쉽게 경계선을 찾을 수 있도록 경계선상의 중요 지형지물을 요도의 경계선상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만일 실지로 경계선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지도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각종 지형지물의 확인

경계선 확인이 끝나면 경계선내의 각종 지형지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위치에 사실 그대로 표시되어 있는가 누락된 것이

없는가 또는 착오된 것이 없는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가기입 및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거처에는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 누락된 거처를 추가 기입할 때에는 해당 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가 되도록 거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에 거처라 함은 각종 건물과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1) 거주목적으로 건축된 일반 독립주택
- 2) 여러 가구가 각각 별도로 살 수 있도록 건물이 완전히 구획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3) 거주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그 안에 사람이 살든 안살든)
- 4) 건물로는 볼 수 없으나 사람이 살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등

다. 수정, 보완요령

조사구 순회 및 가구 방문시마다 거처의 신축 및 철거, 도로의 확장등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구요도를 수정 보완한다.

(1) 신축(누락)거처의 경우

탐당 조사구 경계선내의 지역에서 신축거처(아파트제외) 및 누락거처가 발견된 경우에는 새로 발견된 순서에 따라 구역번호 차례로 편입시켜 해당 구역의 마지막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조사구요도상에는 해당 위치에 그 거처를 그려넣고 인구동태 조사구역에 해당되는 거처의 가구만을 대상가구로 하여 조사를 한다.

[예] 조사구번호가 104이고 구역수가 6개인 조사구의 인구동태조사 해당 구역이 3번과 4번구역일때 7개의 신축거처가 발견되었다면

(발견순서) (편입구역번호)

1 번째 거처	1 구역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 (조사대상거처가 아님)
2 " "	2 "	
3 " "	3 "	} 조사구요도상에 보완 → (인구동태조사 대상거처)
4 " "	4 "	
5 " "	5 "	} 조사구요도에만 보완 → (조사대상거처가 아님)
6 " "	6 "	
7 " "	1 "	

이때 전월의 3번구역의 거처수가 5개였고 4번구역의 거처수가 4개였다면 3번째 발견된 거처는 요도상에서는 6번거처가 되고 4번째 발견된 거처는 5번거처가 된다.

(2) 철택 (착오) 거처의 경우

요도상의 해당 거처번호 위에 「X」 표를 한다.

(3) 기타 지형지물의 변동시

조사구요도상에 변동된 내용대로 수정 보완한다.

(4) 주의사항

조사구요도의 경계선과 각종 지형지물의 변동 내용을 보완할 때에는 반드시 적색 볼펜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 거처에 이미 부여한 번호는 어떤 거처가 철택되어 결번이 생기더라도 변경해서는 안된다. 즉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 및 앞으로 신축이나 누락의 경우에 새로 부여하는 거처번호는 별도로 지시가 없는한 조사원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2. 가구표 작성

가. 일반 주의사항

* 가구표는 인구동태 표본조사의 기본 자료로서 다음과 같은 순서와 요령으로 작성하고 계속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가구표상의 모든 항목은 표본조사표상의 조사항목과 같이 중요한 조사의 내용이므로 모든 항목의 조사기입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 도시에서 면접을 거부할 경우 대문밖에서 대강의 문답으로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면접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원은 몇 번이라도 재방문하여 조사원의 신분과 조사의 목적 및 조사결

과가 통제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수차의 노력에도 안정된 상태에서의 면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반장 혹은 이장에게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대동 방문하거나 지도원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이러한 사항은 조사내용의 정확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가구표의 「㉔비고」란에 기입하여 둔다)

- * 모든 조사사항은 가구원 개개인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이는 실행할 수 없을 경우가 많으므로 각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동거인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여야 한다.
- *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표를 가구주에게 맡겨 기입토록 하고, 다음날에 이를 회수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 * 특히 생년월일은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한다.
- * 출산계획 및 임신여부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묻는다.

나. 가구표 작성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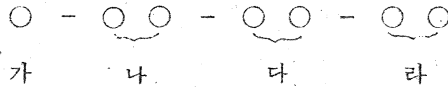
① 조사구번호

담당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②③④ 가구번호

가구표의 가구번호는 조사구요도상의 구역번호 및 거처번호를 포함하여 그 거처내에 몇가구가 생활하도록 구획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구가 몇번째 변동된 가구인가에 따라 기입

한다. 사람이 실지않는 거처에는 조사구요도상의 거처번호만 기입하고 가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가구번호 기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부분) 조사구요도상의 구역번호를 1단위로 기입한다.

나부분) 조사구요도상의 거처번호를 2단위로 기입한다.

예) 제 1구역의 1번거처 → 1-01

제 2구역의 5번거처 → 2-05

제 1구역의 7번거처 → 1-07

다부분) 거처내에 살고있는 가구수를 2단위로 기입한다.

예) 제 1구역의 1번거처에 두집이 살고있을때 그 첫번째

째가구 → 1-01-01

제 1구역의 1번거처에 두집이 살고있을때 그 두번째

째가구 → 1-01-02

라부분) 처음 가구번호를 부여한뒤 그 가구가 몇번 변동되었는가를 기입한다.

예) 제 1구역의 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첫번째가

구는 처음과 똑같음(변동되지 않았음) → 1-03-01-01

제 1구역의 3번거처에 3가구가 살때 그 두번째

가구는 3번이사가고 4번째 이사들어온 가구임.

→ 1-03-02-04

그리고 전입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번호 “라”부분만 변동되도록 가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나” “다”부분은 처음 조사원이 부여하면 그 이후에는 변동되지 않음)이때 이미 전출가구가 있더라도 이 전출가구의 가구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예외인 경우

첫째 ; 같은 거처내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 거처에 세가구가 살고있는데 한가구가 전출했을 때 그 옆방에 살던가구가 그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동이유는 방이 따뜻해서, 부엌이 조금 더 넓으니까 등)

둘째 ; 같은 거처내에서 다른 가구가 사용했던곳까지 합해서 사용할때는 가구번호를 바꾸지 않는다.

예를들면 어떤거처에 세가구가 살다가 한가구가 전출했을때 그 전출가구가 살던곳을 옆방에 살던가구가 사용할때는 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다.

[가구의 정의]

가구라 함은 1인 또는 2인 이상이 한데 모여 취사, 취침, 생계를 같이하는 모임을 말한다. 따라서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보통가구-일반가구

(2) 단독가구-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 즉 한 사람이 집을 완전히 차지하거나
방을 빌려서 자취를 하는 경우

- (3) 준 가구-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여러사람이 한데 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가구 즉 다방, 미장원, 이발소, 음식점등에서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종업원들이 함께 그곳에서 먹고 잘 경우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 남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사람은 단독가구가 될 수 없고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 부부나 가족과 함께 하숙을 하는 경우는 별개의 보통가구가 된다.
- * 고용주와 같이 살면서 숙식을 같이하는 식모, 점원, 기타 고용인 등은 주인가구의 가구원으로 한다.
- * 기숙사, 양로원, 요양원, 고아원등은 조사편의상 가구의 형태 개념에서 제외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의 일반 가구(양로원, 요양원, 고아원등의 관리인 가구, 기숙사 사감의 가구등)는 조사한다.
- * 외국인 가구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한가구로 한다.
- * 외국인은 조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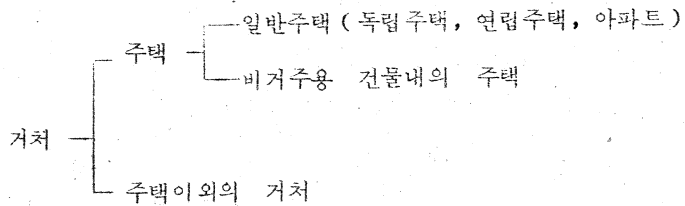
⑤ 주소

그 가구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말하며 도와

구·시·군은 기입하지 않고 동·읍·면 단위부터 기입하되 번지·호수는 물론 통·반까지 자세히 기입한다.

⑥ 거처구분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따라서 ⑥란을 기입하기 위하여 조사원은 먼저 응답자가 살고 있는 장소가 주택에 속하는지 주택이외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다음에 만일 그 거처가 주택에 속한다면 그 주택의 종류를 가려야 할 것이다.

주택의 판별과 주택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정의]

보통독채로 된 살림집이나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완전히 구획된 건물의 일부로서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한다. 주택의 구비요건은,

첫째 : 영구건물

둘째 : 한개 이상의 방 및 부엌

세제 : 독립된 출입구

내제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일단위

[주택의 종류]

독채 살림집,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이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독립주택 : 원칙적으로 한 가구만 살도록 건축 또는 개축된 건물을 말한다.
- (2) 연립주택 : 두가구 이상이 살도록 연립하여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 (3) 아파트 : 한 건물내에 다수의 가구가 살수 있도록 분획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 (4)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 여관, 식당, 상점, 사무실, 공장등과 같이 살림집으로 건축되지 않은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를 말한다.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거처

예 : ㄱ. 호텔, 여관등의 숙박업소

ㄴ.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고아원, 보육원 등 특수사회시설

ㄷ. 사찰(암자 제외)

ㄹ. 토목공사 현장

ㄷ. 기타 천막 토굴등

⑦. 소유관계

1. 자 가 : 가구주소유의 집
2. 전 세 : 집주인에게 정해진 돈을 이자없이 맡기고 들었다
가 나갈때 다시 갖게되는 셋집 (셋방)
3. 보증부월세 : 보증금을 내고 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4. 삭월세 : 일정한 돈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셋집 (셋방)
5. 월 세 : 보증금없이 정해진 월세를 매월 지불하는 셋집
(셋방)
6. 기 타 : 무상 (세없이 빌려든 집이나 방), 관리비만 내는
관사 또는 사택등이 포함되며 그 내용에 따라
우측 여백에 무상, 관사, 사택이라 기입한다.

⑧. 구역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 1 ”에 ○표
시하고, 기타구역에는 해당번호에 ○표시한다.

⑨. 가구구분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구역내의 가구에 대하여 해당번호에
○표시를 하고, 기타구역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⑩. 번 호

가구월번호로 가구월수가 7인 이상일 때에는 가구표를 2매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장의 번호는 08,09,10……등으로 수

정하고 ⑤란부터 ⑨란까지는 기입하지 않는다. 이때 란외의 (매중 매)란을 기입하여야 한다. 가구원수가 7인 이하일 경우에는 (매중 매)란은 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일단 사용했던 가구원번호를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전출한 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도 종전의 가구원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맨 마지막 번호를 준다.

⑩ 이 름

가구주와 가구원의 이름을 기입하되 가급적이면 가구주, 가구주의 처, 미혼자녀, 기혼자녀, 가구주의 형제 및 자매, 부모, 친척, 동거인 순서로 기입한다.

[가구주의 정의]

가구주라 함은 가구원의 생계책임을 지고 그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나 응답자가 인정하는 대로 따른다. 준가구일 경우 그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여 가구주로 한다.

[가구원의 정의]

가구원이란 가구주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혈연관계가 있든 없든)으로 상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주하는 사람의 정의]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당시 그곳에 생활의 본거의사를 갖고 같이 사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사람

이 된다.

- (1)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상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 (2) 조사구내에 살고 있으면서 조사당시 일시적으로 밖에 나가있는 사람 즉 친족방문, 출장, 사업상 여행중인 사람
- (3) 가족은 다른 구(조사구 밖)에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날자를 그 조사구내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 즉 방학동안에만 자기 집에 가 있고 학교는 그 조사구내에서 다니는 학생, 직장을 그 조사구내에서 다니면서 가끔 자기집에 들리러 가곤하는 사람, 가정부 등
- (4) 일정한 주거가 없으면서 조사당시 조사구내에서 발견된 사람 즉 일정한 처처가 없는 노동자, 절인등과 그들의 가족
- (5) 영외에 거주하는 현역군인(출·퇴근하는 군인)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장기간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중 선박승무원, 항공기탑승원,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중인 사람들은 상주 개념에 관계없이 가구원으로 간주한다.

* 외국인,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 교도소수감자는 가구원으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 실패하여 부모님도 뵈울점하여 당분간 와있는 사람중(본인들은 곧 간다고 할 경우) 다음 달에도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이 문을 닫아 당분간 와있는 사

람중 그 다음달에도 그곳에 살고 있으면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아들이 번갈아 가며 부모님을 모시기로 하여 이번에는 이 조사구내의 아들차베여서 부모님이 오셨을 경우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는 가구원으로 조사한다.
- * 학교에 다니거나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집을 나간 사람중 (부모들은 곧 올거라고 얘기함) 다음달에도 오지 않았으면 전출로 처리한다.

⑫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한다. 즉 가구주, 처, 차남, 차녀, 장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부, 모, 친척, 가정부(식모), 친지, 동거인, 하숙인, 정원, 고용인 등.

⑬ 성 별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로 기입한다.

⑭ 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실제로 출생한 생년월일을 알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 순서를 밝는다.

1. 생일이 언제입니까?
2. 양력입니까? 음력입니까?
3. 몇살입니까? 따는 무엇입니까?

로 질문한 후 음력의 경우는 양음력 환산표를 보고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하고 나이와 띠가 다르게 응답했을 경우에는 “띠”를 중심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⑮ 학 력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등의 재학, 중퇴, 졸업을 나타내도록 “국2년 재”, “국졸”, “중3년 재”, “중졸”, “고1년 재”, “고졸”, “대2년 재”, “대졸”로 기입하되 연령미달로 미취학의 경우에는 “미취”, 기타 인력이 지났으나 학교를 안다닌 경우에는 “무학”으로 기입한다. 각급 학교 중퇴의 경우 완료된 수학 연수를 함께 기입한다. 즉 중학교를 3년 다니다 중퇴하였으면 “중2년 중퇴”로 기입한다. 특히 유의할 사항은 재학중인 학생은 몇년 재학중인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⑯ 배우관계

호적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배우관계를 기입하며 다음의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 사실 혼의 경우도 유배우로 한다.

* 한 사람이 한명이상의 처를 거느리고 있을 때에도 모두 유배우로 한다.

* 사별이란 결혼은 하였으나 배우자의 한편이 사망하여 현재 독신으로 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록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별로 취급한다.

* 법적으로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영원히 살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별거하고 있는 사람은 이혼으로 간주한다.

* 미혼은 한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두번 이상 결혼한 경우 최종상태를 배우관계로 한다.

즉 초혼에 실패(이혼, 사별)하고 재혼하였으나 사별(이혼)하여 현재 홀로 있으면 사별(이혼)에 해당된다.

㉞ 초혼 년월

모든 기혼남자 및 여자에 대하여 첫 결혼년도 및 월을 조사 기입한다. 초혼년도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먼저 초혼당시의 연령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계산하고 음력월은 양력으로 환산하도록 한다. 사실혼의 경우 동거시작년월을 기입한다.

[예 1] 출생년월일 1941년 6월 18일

초혼 연령 23세 음11월 30일(세는 나이)

1941

+ 22

1963 초혼년월 : 1964.1.14 일

이 경우 양·음력 환산표 1963년을 보고 음력 11월 30일을 찾으면 다음 해로 넘어감을 알 수 있다.

[예 2] 출생년월일 1924년 11월 23일

초혼 연령 19세 음3월 15일(세는 나이)

1924

+ 18

1942 . 4.29 일 - 초혼년월

양·음력 환산표 1942년에서 음력 3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42년 4월 29일이 된다.

[예 3] 출생년월일 1942년 1월 19일

초혼 연령 29세 양력 12월 25일 (세는 나이)

가) 1942

+ 28

1970.12.25

출생년월일이 양력이나 음력 모두 1942년에 해당될 경우

나) 1942

+ 27

1969.12.25

출생년월일이 음력으로는 1941년에 해당되고 양력으로는 1942년일 경우

※ 초혼년월계산은 초혼일자가 생일을 지났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고 다만 초혼일자나 생일이 음력일 경우 양력으로 환산해서 다음 해로 넘어갔을 때만 2를 빼준다.

(환산해도 똑같은 연도일 때는 1만 빼준다.)

㉘ 출산계획

기혼부인에게만 묻는다. “앞으로 자녀를 (더) 가지실 생각이십니까? (더 낳겠다는 경우) 남자아이는 몇명이나 더 낳으시겠습니까? 여자아이는 몇명이나 더 낳으시겠습니까”와 같이 묻는다.

⑮란은 실제 출산계획을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더 낳고 싶지만 낳을 수 없다.”(신체적 결함 및 기타 이유로)는 경우는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한다. 또한 애매한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낳는데까지(생기는대로) 낳겠다”던가 “모르겠다”는 경우는 만일 부인께서 출산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다면 몇명의 자녀를 더 두시겠습니까?라고 물어 그 결과에는 다음과 같이 ○으로 확실한 출산계획이 없음을 표시한다. 설득하여도 애매한 응답만을 할 경우에는 응답거부로 기입한다.

⑯ 임신여부

기혼부인중 임신가능연령(15-49세)에 해당하는 부인에게 임신여부를 물어 임신부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출산예정년월을 조사하여 기입한다. 또한 그 임신이 끝났을 경우에도 변동보고서 71 임신결과란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임신결과는 정상출산(출생) 및 중절, 사산등 모든 경우 다 보고하여야 한다.

⑰ 전입일자

가구 또는 가구원이 실제로 전입한 일자를 기입한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전입누락을 2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전입한 일자이다.

⑱ 비 고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나 기록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를

함께 기입한다.

기입방법은 “가구표의 보완” 참고

㉒ 가계조사 부적격 사유 : 가계조사구역내의 부적격가구에만 부적격 사유를 기입한다.

㉓ 비 고 (거처 및 가구특징등)

조사에 참고가 될 사항은 무엇이나 기입할 수 있다. 특히 가구의 특징과 동태조사에 대한 응답태도는 반드시 기입한다.

가구특징으로는 예를들면

- * 구멍가게를 경영 생활
 - * 극빈가구 : 가구주 반신불수
 - * 상류 생활가구 주택건평 50 평
 - * 4번 가구원(○○○)임신불능
 - * 대포집
 - * ○○공장 안집으로 4명의 기능공이 등거
 - * 조사에 매우 협조적임
 - * 조사에 비협조적이며 응답에 성실성이 없음
- 등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입하도록 한다.

3. 변동보고서 작성

가. 작성시기

매월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의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가구 표 및 조사구요도를 수정 보완하고 그 내용을 변동보고서 및

가구표에 기입하여 제출한다.

나. 제출일자

매 익월 5일까지 전월 21부터 금월 20일까지 1개월간의 변동보고서를 인구동태 표본조사표와 같이 제출한다.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도 「③현황」란만을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입요령

(1) 란외 사항

① 조사구번호

담당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② 가구표정리

조사담당

제출하기 전에 가구표와 다시한번 비교 검토하여 기입내용을 확인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사무소장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고 사무소장이 확인날인 한다.

담당

조사원은 기입하지 않는다.

③ 현 황

전월가구

전월변동보고서 제출당시 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변동보고서 ③란의 금월가구수가 전월의 가구수가 된다.

증가가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⑤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감소가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가구수를 기입한다. 즉 ⑭란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금월가구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가구수를 기입한다.

$$\text{금월가구수} = \text{전월가구} + \text{증가} - \text{감소}$$

전월인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당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즉 전월 변동보고서 ③란의 금월의 인구수가 전월의 인구수가 된다.

증가인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증가인구수를 기입한다.

$$\text{증가} = \text{⑤} + \text{⑳}$$

감소인구

전월 변동보고서 제출후의 감소인구수를 기입한다.

$$\text{감소} = \text{⑮} + \text{㉑}$$

금월인구

변동보고서 제출시의 인구수를 기입한다.

$$\text{금월인구수} = \text{전월인구} + \text{증가} - \text{감소}$$

금월인구수는 변동사항종합표상의 인구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④ 출생, 사망전수

③현황과는 별도로 출생과 사망전수(누락전포함)를 기입하여 준다.

단, 출생과 사망의 누락분에 대해서는 특기사항에 「〇〇월 출생누락 1건」 등과 같이 기입하여 준다.

(2) 난내 사항 ⑤란부터 ⑳란까지

① 가구증가

①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⑤란부터 ⑬란까지 같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단, 가구전입의 경우 각 가구원의 이전 거주지가 서로 다른 경우 이를 특기사항란에 일일이 기입한다.

②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가 2가구로 되었을 때에는 분가된 가구수를 하단 「분가 가구수」란에 기입하고 ⑤란 총 증가 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② 가구감소

①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의 경우에는 ⑮⑯⑰란에 가구표의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고 ⑱란은 감소된 총 가구수 ⑲란에는 이들 가구의 총가구원수(⑰란의 합계)를 기입한다. ㉑구분란에는 전출, 전출누락, 사망(1인 가구일 경우) 착오를 변동이유로 기입한다. 가구전출의 경우 ⑳란에는 〇〇〇도 〇〇시·군을 기입한다. ㉒란 이동 사유는 상세히 기입한다.

가구전체가 전출하였으나 그 목적지가 가구원별로 다를

경우 「○번가구원은 ○○도 ○○시·군으로」 「○번 ……, 가
 구원은 ○○도 ○○시·군」으로 특기사항란에 기입한다.

② 조사구내의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하단에
 「통합된 가구수」를 기입하고 ⑭란에 감소된 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③ 가구원 증가

가구원의 전입, 전입누락, 착오, 출생등은 가구원의 증가요인이
 된다. 이때에는 가구표의 정리를 위해 ⑳란부터 ㉔란까지 가
 구표 작성요령으로 기입한다.

④' 가구원 감소

가구원의 전출, 전출누락, 착오, 사망등은 가구원의 감소요인이
 되므로 이때에는 「④'가구원 감소」의 각 란에 가구감소와 같
 은 요령으로 기입한다.

⑤ 가구표 수정내용

가구표의 내용을 수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구번호 가구원번
 호를 ④⑦ 및 ④⑧란에 기입하고 ④⑨란은 수정하여야 할 항목번호
 를 기입하고 ⑤⑩수정내용에는 수정할 내용을 기입한다.

기입 예 :

예	④⑦ 가구번호	④⑧가구 원번호	④⑨가구 표 란 번호	⑤⑩ 수정내용	
				수정전 내용	수정후 내용
1) 1-05-01-02 가구 2번가구원 임희순의 생년월일 1937.2.15 → 1927.2.15 로	1-05-01-02	02	14	1937. 2.15	1927. 2.15

예	㉔ 가구번호	㉕가구 원번호	㉖가구 표란 번호	㉗ 수정내용	
				수정전 내용	수정후 내용
2) 2-06-02-01 번가 구 6번가구원 김철성 의 가구주와의 관계 4남→집원으로	2-06-02-01	06	12	4 남	집 원
3) 1-06-03-02 번가구 3번가구원 김영식의 학력란이 중졸→대 2재로	1-06-03-02	03	15	중 졸	대 2재
4) 2-20-02-01 번가구 가구주의 이름이 김병석→김영식으로	2-20-02-01	01	11	김병석	김영식

㉘ 동일 조사구내 이동

㉙ 분 가

- ① 어떤 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동일 조사구내에서 한 가구를 형성하여 분가했을 때에는 「㉚구분」란에 분가라고 기입하고 ㉛㉜란은 이동하기 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하고 ㉝㉞란은 이동후의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㉛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 「㉜이동후 거처의 종류」

- 「㉔이동후 주택소유관계」 「㉕이동후 배우관계」 「㉖초혼년월」 란은 이동한 후에 변경된 상태를 기입한다.
- ②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가 분가하여 한 가구를 형성하여 한 가구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그 분가한 가구를 「11가구증가」의 하단의 「조사구 내의 분가가구」란에 기입하고 ⑤란 총 증가가구수에 합산하여 준다.
- ③ 분가가구는 새로운 가구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내) 통 합

- ①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 가구로 통합하였을 때에는 「6조사구내 이동」란에서 「51구분」란에 통합이라 기입하고 「52이동전 가구번호」 「53이동전 가구원번호」, 「54이동후 가구번호」, 「55이동후 가구원번호」, 「56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를 분가의 경우와 같이 기입하고 「57이동후의 거처의 종류」 「58이동후의 소유관계」는 사선「/」을 치고 「59이동후 배우관계」는 변동이 있으면 기입하고 변동전과 같으면 사선「/」을 친다.
- ② 동일 조사구내에서 2가구가 한가구로 통합되어 한 가구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통합된 가구수를 「2가구감소」 하단의 「조사구내의 통합가구」란에 기입하고 「14」란 총 가구감소수에 합산하여 준다.
- ③ 통합가구에 대하여서는 가구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다.

(대) 이 동

① 동일 조사구내에서 이동가구가 있을 때에도 「6 조사구내 이동」란에 기입한다. 「51 구분」란에는 “이동”이라 기입하고 「52 이동전 가구번호」 「54 이동후 가구번호」 「55 이동후 거처의 종류」 「56 이동후 소유관계」를 이동후 변동사항을 기입하고 「53 이동전 가구원번호」, 「55 이동후 가구원번호」, 「59 이동후 배우관계」는 사전 「/」을 친다.

② 동일 조사구내 가구이동은 가구 증감에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 기입하는 곳이 없으며 가구표도 작성하지 않으나 가구표상의 가구번호를 두줄로 긋고 이동후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③ 동일 조사구내에서 가구원이 다른 가구의 가구원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52 이동전 가구번호」, 「53 이동전 가구원번호」, 「54 이동후 가구번호」, 「55 이동후 가구원번호」, 「56 이동후 가구주와의 관계」를 기입한 후에 「59 이동후 배우관계」, 「60 초혼년월」은 이동후 변경이 있으면 기입하고 없으면 「57 이동후 거처의 종류」, 「58 이동후 주택소유관계」와 같이 사전 「/」을 친다.

「예」

⑬ 조사구내 이동(가구이동, 가구원이동, 분가, 통합)

⑤1 구분	⑤2 이동전 가 구 가 번 호	⑤3 이동전 가 구 원 가 번 호	⑤4 이동후 가 구 가 번 호	⑤5 이동후 가 구 원 번 호	⑤6 이동후 가 구 주와 의 관 계	⑤7 이동후 거 처 의 종 류	⑤8 이동후 주 소 판 계	⑤9 이동후 배 우 관 계	⑥0 이동후 초 혼 연 월
가구이동	1-02-01-01		1-06-02-01						
분 가	1-04-01-01	03	1-02-02-02	01	가구주	독립주택	전 세		
분 가	1-04-01-01	07	1-02-02-02	02	처	독립주택	전 세		
통 합	1-09-01-02	01	1-02-01-01	05	장 남				
통 합	1-09-01-02	02	1-02-01-01	06	장남의처				
가구원이동	1-10-03-02	08	1-05-01-01	06	장 남				
분 가	1-20-01-01	04	1-12-04-02	01	가구주	독립주택	전 세	유	78.4

7. 임신기록 및 결과

(1) 기혼부인중 가임여성 (15-49세)에 대하여 임신여부를 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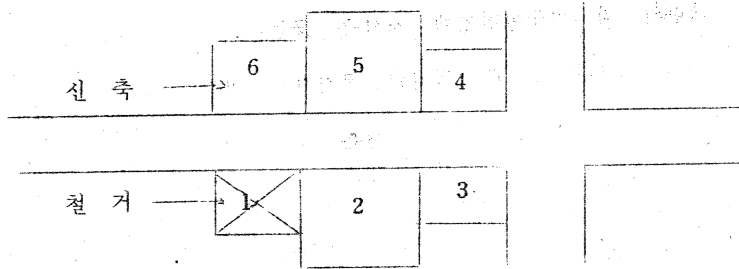
임신중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⑥1가구번호 ⑥2가구원번호
⑥3부인이름 ⑥4출산예정년월을 기입하고 ⑥5결과란은 사산을
친다. 그러나 임신했던 부인의 임신이 끝났을때는(정상출산,
중절, 사산, 기타의 모든경우 다 해당됨) ⑥1가구번호 ⑥2가구
원번호 ⑥3부인이름 ⑥5결과란을 기입하고 ⑥4출산예정년월은 사
산을 친다. ⑥6비고란에는 중절이나 사산된(몇 개월만에 중
절, 사산되었나?)개월수 및 기타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상
상임신, 특수한 병으로 인한것을 임신으로 오판등)를 기입투
록 한다.

특히 사산에 대해서는 출생즉시 사망했는가의 여부를 응답자
에게 재확인하여 영아사망과 사산을 정확히 구분토록하여야
한다.

(2) 전입과 동시에 출생한것은 임신기록난에 기입하지 않는다.

8. 특기사항 및 신축(누락)거처의 위치

신축(누락) 건물(거처)의 위치를 조사구요도의 보완내용대
로 그려넣고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그리고 지형지물이 변동되었
었을 때에는 조사구요도의 보완내용을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
으로 그려넣는다. 단, 중요한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는 요도를
새로 그려 첨부한다.



그 외 ①-⑦항까지 기입할 수 없었던 사항은 무엇이나 이
란을 이용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예 :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2-3번 거처는 6월중으로 철거
예정임.

4. 가구표 보완

매월 변동보고서 및 분기별 인구동태표본 조사결과에 따라 가구
표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 보완한다.

* 가구당부도 가구표에 준해서 함께 수정보완해야 한다.

가. 기존거처내의 가구변동

조사구요도에 이미 번호가 기입된 기존거처내에 가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전입가구가 있을 때

(가)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한 가구를 발견하였을 때
에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

입하여 철하고 2부는 보고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2) 전출가구가 있을 때

(가) ⑩란의 각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는다.

(나) ⑳란 비교란에 전출년월일과 목적지를 기입한다.

(자 가구원별로 목적지가 다른 경우 ㉑란에 같은 양식으로 기입한다)

(다) 가구표는 버리지 않고 맨뒤에 거꾸로 철한다.

(3) 누락가구가 있을 때

(가)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있던 가구가 전입누락된 것을 발견하였을때는 변동보고서 ①가구증가의 ⑦란부터 ⑬란까지 기입하고 ⑭구분란에는 전입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나)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하고 가구표를 3부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삽입하여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다)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부터 없던 가구가 전출누락된 것을 발견했을때는 변동보고서 ②가구감소의 ⑯란부터 ㉒란까지 기입하고 ㉓구분란에는 전출누락가구임을 기입한다.

(라)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하고 가구표는 맨뒤에 거꾸로 철해둔다.

(4) 착오가구가 있을때

(가) 착오로 인하여 없는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했을때는 ⑩란의 각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고 ㉓비고란에 착오가구 및 변동

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나) 변동보고서 ㉒가구감소의 ㉑란부터 ㉓란까지 기입하고 ㉓구분
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출가구에 준
한다.

(다)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있던 가구의 가구표를 작성하지 않
았을 때는 가구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가구번호 순서대로
철하고 2부는 조사표류와 함께 제출한다.

(라) 변동보고서 ㉑가구증가의 ㉗란부터 ㉙란까지 기입하고 ㉙구분
란에는 착오가구임을 기입하고 모든 업무처리는 전입가구에 준
한다.

(5) 동일조사구내에서 이동한 가구가 있을 때
기존가구번호에 두줄을 긋고 새가구번호를 기입한 다음 ㉓비
고란에 「동일조사구내 이동: ○-○○-○○ =○○에서 ○-○○-
○○-○○으로」라 기입한다.

순서를 바꾸어 다시 철한다.

* 이때 물론 바뀐주소 「㉖거처구분」 및 「㉗소유관계」 등은
정정 기입하여야 한다.

(6) 어떤가구에서 분가된 가구가 있을 때

(가) 어떤가구의 가구원 일부가 한가구를 형성하여 분가를 했을
때에는 분가되어 나가 가구원은 ㉓란에 「○-○○-○○-○○
번 가구로」라고 기입한다.

(나) 분가되어 나간 가구는 전입후의 거처에서는 전입가구와 같은 순서로 처리하고 ㉓비고란에 「○-○○-○○-○○가구에서 분가」라 기입한다.

(7) 조사구내의 2개 가구가 통합되어 1개 가구로 되었을 때

(가) 통합을 위하여 전출된 가구의 거처에서는 전출가구로 처리하고 ㉓란에 「○-○○-○○-○○번 가구로 통합전출」이라 기입한다.

(나) 가구가 통합된 거처의 가구에서는 전입가구원처럼 처리하고 ㉓비고란에 「○-○○-○○-○○번 가구에서 통합전입」이라 한다.

나. 거처의 변동시

조사구내의 거처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1) 신축건물(거처)이 있을 때

신축건물(거처)내에 가구가 있으면 전입가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가구가 없으면 가구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2) 철거건물(거처)이 있을 때

철거된 건물(거처)내에 가구가 있었다면

(가) 그 가구가 같은 조사구로 옮겼으면 동일조사구내 이동으로 처리하고

(나) 그 가구가 조사구밖으로 나갔으면 전출가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3) 누락건물(거처) 혹은 착오건물(거처)이 있을 때 누락가구
혹은 착오가구의 처리방법에 준한다.

다. 기존가구내의 가구원 변동시

이미 가구표가 작성되었던 가구내에 가구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한다. 이때 가구원의 변동사항 확인방법은 각 가구를 방문했을 때 우선 가구원수 및 가구원이름을 물어, 가구표와 대조 확인한다.

(1) 전입가구원이 있을 때

(가) ⑩란에 마지막 가구원번호가 되도록 한다.

(나) ⑪란부터 ⑳란까지 가구표 각란 기입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다) ㉑란 기입 예

사 례

기 입 방 법

동일조사구 전입 : ○-○○-○○-○○에서 전입 (81.6.15)

시 구
외부에서 전입 : ○○도 ○○시에서 전입 (81.1.20)
군

(2) 전출가구원이 있을 때

(가) ⑩란의 전출가구원의 번호위에 사선을 긋는다.

(나) ㉑란 기입 예

사 례

기 입 방 법

동일조사구 전출 : ○-○○-○○-○○로 전출 (전출일 81년1월30일)

시 구
외부로의 전출 : ○○도 ○○시으로 전출 (전출년월일)
군

(3) 누락가구원이 있을 때

(가) 전입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전입누락보완」이라 기입한다.

(나) 전출누락 가구원의 경우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전출누락보완」이라 기입한다.

(4) 착오가구원이 있을 때

(가) 착오로 인하여 그 가구의 가구원이 될수 없는데도 가구포에 기입되었을 때에는 전출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나) 착오로 인하여 원래부터 그 가구에 있던 사람을 가구원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때는 전입가구원과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년·월 착오보완」이라 기입한다.

(5) 출생아가 있을 때

전입가구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여 ㉑란에 「보고 년·월 출생」을 기입한다.

(6) 사망자가 있을 때

(가) 전출가구원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되 ㉑란에 「사망보고 년·월」이라 기입한다.

(나) 가구원번호에 사선을 긋는다.

(7) 출생후 사망아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이나 이후에 출생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출생으

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8) 누락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누락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9) 전입후 사망자가 있을 때

지난달 변동사항 확인이후에 전입하였다가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우선 전입으로 간주하여 가구표에 기입하고 다시 사망으로 처리한다.

(10)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자가 있을 때

전입전 거주지에서 출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출생과 전입 두가지로 처리한다. (조사대상기간중의 출생일 경우에 한함)

(11)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자가 있을 때

(가)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한 경우를 금월 변동사항 확인시에 알아냈을 때에는 전입한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한다. (조사대상기간중의 사망일 경우에 한함)

(나) 이 때에는 비록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으나 전입가구원과 같은 요령으로 ⑩란부터 ⑳란까지 기입한다.

5. 가구명부 보완

가구의 변동내용에 따라 가구표의 수정 및 보완, 변동보고서의

기입과 동시에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가. 가구감소의 경우

전출가구, 전출누락가구, 착오가구, 통합가구는 가구의 감소요인이 되며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② 증감여부

사인을 긋는다.

⑥ 변동일자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년월일을 기입한다.

⑦ 변동구분

전출, 전출누락, 착오, 통합등으로 기입한다.

⑧ 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⑫ 비 고

동일조사구내로 전출한 경우 「○-○○-○○-○○번 가구로 이동」이라 기입한다.

나. 가구증가의 경우

전입가구, 전입누락가구, 착오가구, 분가는 가구의 증가요인이 되며, 마지막 가구 다음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1)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② 증감여부
○표시를 한다.
- ③ 표본가구 번호
기입하지 않는다.
- ④ 가구번호
새로 작성한 가구표의 가구번호를 기입한다.
- ⑤ 가구주 이름
가구주의 이름을 기입한다.
- ⑥ 변동일자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하여 전입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 ⑦ 변동구분
전입, 전입누락, 착오, 분가등을 기입한다.
- ⑧ 보고년월
변동보고를 한 년월을 기입한다.
- ⑫ 비 고
동일조사구내에서 전입했을 경우 「○-○○-○○-○○번
가구가 전입」이라 기입한다.

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의 증감의 경우

- (1) 사람이 살지 않는 거처가 철거(착오)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 ⑤ 변동일자
철거(착오) 년월일을 기입한다.

⑦ 변동구분

각 경우에 따라 철거 혹은 착오라 기입한다.

(2) 사람이 살지않는 거처가 신축(누락)되었을 때
다음의 해당란에만 기입한다.

④ 가구번호

거처번호만 기입한다.

⑥ 변동일자

신축(누락) 년월일을 기입한다.

⑦ 변동구분

신축 혹은 누락이라 기입한다.

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처가 신축, 철거되었을 때

거처의 신축, 철거의 사실을 변동일자와 변동구분에 기입하고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구내 이동 혹은 각 경우에 따라 가구
의 증가 혹은 감소의 기입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6. 변동사항 종합표기입

매월 20일까지의 가구수와 인구수를 해당란에 기입하고 가구표철
맨위에 같이 철해 둔다.

Ⅲ. 조사표작성 및 면접요령

1. 주의사항

- (1) 가구표와 조사표 및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를 휴대하고 조사에 임한다.
- (2) 가구원수 및 가구원성명을 물어 가구표와 비교한 후 인구동태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표를 작성한다.
- (3) 조사표상의 모든 년·월·일(출생, 사망, 기타)은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 기입한다.
- (4) 조사표 기입요령을 충분히 익혀 조사에 임한다.
- (5)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조사표의 기입을 응답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 (6) 조사표의 질문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의 잘못이 없도록 해야하며 질문시에는 조사표상의 항목순서대로 질문함으로써 질문 누락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7) 규정된 조사기일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사기일전이나 기일이 지난 후에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2. 면접방법 및 조사표 기입요령

- (1) 매 조사대상기간중 조사구내에서 발생한 인구동태건(출생, 사망, 혼인, 이혼)을 조사하여 인구동태표본조사표를 작성한다. 출생과 사망에 대하여는 조사대상기간중에 대한것만 묻지 말고 과거 1년

간에 대해 조사하여 수시로 누락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출생, 사망의 누락 혹은 보고내용이 조사원 자신에 의해 보완, 수정되었을 때는 조사원업무상 책임문제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누락 조사상의 오류등이 중앙직원에 의한 확인조사에 의해 밝혀질 때에는 조사원은 업무상 태만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조사표는 가구별로 작성하며 한 조사표에 해당가구의 출생, 사망, 혼인, 이혼등의 동태사항을 기록한다. 이상의 동태건이 하나도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1982년 1월분조사는 '82.1.1 ~ '82.2.20일까지 1개월 20일이 조사대상기간이므로 이점에 유의하기 바람.

(3) 1982년부터 조사대상기간이 전월 21일부터 금월 20일까지 1개월간이므로 전월에 발생한 동태건수를 누락시키기 쉬우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출생의 정의

출생이란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 노출된 현상으로서,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태출의 절단 또는 태반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호흡, 심장의 고동, 태출의 진동 수의근의 명료한 움직임등 생존하고 있는 증거가 있을 때를 말한다.

출생은 출생의 정의에 따라 원칙으로 상주 개념에 의거 조사하며 아기의 출생신고 여부 또는 출생후 사망등과는 관계없이 일

단 출생한 아기는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다른 조사항목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생과 사망건의 파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사원의 업무임을 인식해야 한다. 출생, 사망이 조사에서 누락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특히 여아출생의 경우와 유아사망의 경우에 출생 및 사망의 누락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응답자가 불유쾌한 사건을 남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또한 출산의 소식을 상당기간동안 감추려는 풍습, 이러한 조사로 인해 응답자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호적 미신고, 2인이상 자녀에 대한 벌금의 낭설)의심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조사원은 특히 조심성과 성실성 그리고 끈질긴 자세로 이러한 난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유의사항

(가) 가구를 방문했을때 기저귀가 널려있거나 어린애가 있는 흔적을 발견하였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다른 지역에서 출생하였다 하더라도(모의 친정 혹은 병원 등) 산모가 조사대상 가구내에서 상주할 경우에는 조사해야 한다.

(다) 조사당시 여행중에 있는 아기도 조사한다.

(라) 주은 아기가 조사당시 당해조사구내에 살고 있는 경우는 그 유아의 출생지 및 어머니(생모)의 상주지에 관계없이 동 조사구내에서 조사한다.

(마) 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 어머니가 현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현상주지에서 조사하고 유아 및 어머니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죽기전 상주지에서 조사한다. 이 경우에는 출생과 사망이 함께 조사되어야 한다.

(바) 출생후 입양된 아이는 생모의 상주가구에서 조사한다.

(사) 전입한 가구의 경우, 출생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출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아) 전출가구의 경우, 출생이 조사구내에서 발생했다 할지라도 당해 출생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하였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가구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출생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자) 조사대상기간 말일(20일)이전에 조사원이 실사를 나갔을때는 다음달 조사시 누락기간만큼을 꼭 보완할 것.

(예 : 4,5,7,10월의 경우엔 20일이전에 조사구를 방문할 것임.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다면 다음달에 18,19,20일에 해당하는 변동을 꼭 보완할 것. 18,19,20일에 발생한 출생이나 18,19,20일에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의 출생(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기입사항

일단 출생전이 발견되면 다음 각항을 조사기입한다.

① 본적 및 호주

출생아(출생아 부친)의 본적 및 호주성명을 기입한다.

③④ 모의 이름 및 가구원번호

친모의 이름과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출생아 이름

출생아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기"로 기입하여 보고하되 가구표상에는 정식이름이 생겼을 때에 정정한다. (예 : 김애기)

⑥ 출생년월일

호적과는 관계없이 태어난 아기의 실제 출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⑦ 성 별

출생아의 남녀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에 ○표한다.

⑧ 출산당시 모의 연령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때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출산당시의 모의 나이

(예시 1)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늦는 경우
출생아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빼면 모의 만나이가 된다.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모의 나이)

1981.9.20 — 1952.5.4 = 29 세

(예시 2) 출생아의 출생월이 모의 출생월보다 빠른 경우
출생아의 출생년도에서 모의 출생년도를 뺀 나이에서 다시 1세를
빼야 모의 만나이가 된다.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출산당시 모의 나이

1981.2.27 — 1948.9.11 = 32 세

(예시 3) 출생아와 모의 출생월이 같고 출생일자가 다른 경우
첫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예시 1
과 같이 환산하고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모의 나이

1981.7.21 — 1952.7.15 = 29 세

둘째, 출생아의 출생일자가 모의 출생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예시
2와 같이 환산한다.

※ (출생아 생년월일) - (모의 생년월일) = (모의 나이)

1981.3.3 — 1952.3.18 = 28 세

⑨ 출산순위

신생아가 모의 몇번째 출산아인가를 기입한다. 직접 모에
게 “이 아이는 몇번째 아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 기입

해야 한다. 이때 출산순위는 낳았다 잃은 아이도 포함해서
제산해야 한다.

⑩ 임신기간

신생아의 임신부터 분만까지의 월수를 기입해야 한다. 임신
기간을 알기 위해서는 산모에게 「이 아이를 몇개월만에 낳으
셨습니까?」 등으로 묻고 만일 산모가 확실한 임신기간을 모를
경우는 「마지막 월경 년월일」을 물어 다음 방식으로 달
수를 계산한다.

$$(출산년월일) - (마지막 월경년월일) = \quad \text{개월} \quad \text{일}$$

⑪ 모의 교육정도

아기를 출산한 어머니의 최종 출신학교의 정도에 따라 다
음예와 같이 기입한다. 재학중인 사람이거나 중퇴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학년까지 기입한다.

- (예)
- | | |
|-------------------------|---------|
| 1. 무 학 | 2. 국민교 |
| 3. 중학교 | 4. 고등학교 |
| 5. 대학이상 | |
| 6. 중2중퇴(2학년 수료경우) | |
| 7. 구제중학 5년졸 | |
| 8. 고1재학 | |
| 9. 국4중퇴(5학년 도중에 중퇴한 경우) | |

⑫ 조산자

신생아 분만에 입회하여 분만을 도운사람을 말하며 해당번호

에 ○으로 표시한다. 의사 혹은 조신원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타에 해당한다. 자택에서 분만한 경우라도 의사가 조산했으면 1. 병원에 해당한다.

나. 사. 망

사망의 정의

사망이란 출생후 어느 시기에 있어서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영원히 소멸됨을 말한다. 즉 소생능력이 없는 출생후의 생존가능의 징지를 말하며 사산은 제외한다.

사망도 사망의 정의에 따라 상주개념에 의거 조사하며 사망신고여부, 출생후 사망등과 관계없이 일단 사망한 자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

(1) 유의사항

(가) 본 표본조사의 성패는 사망이 정확하게 포착되느냐 못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사망조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나) 사망은 자칫하면 누락하기 쉽고 응답기피도 많이 나타나므로 응답자를 적절히 유도하여 조사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출생후 사망한 어린아기(유아사망)는 출생과 사망이 모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장,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혹은 이웃을 통하여 최대한의 사전정보를 얻어 신중히 조사를 해야 한다.

(나) 가구원 전체의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멸도 가끔 볼 수 있는 조사누락원인이므로 조사대상 지역주민과 긴밀히 접촉하여 정보를 얻도록 한다.

(바) 악성병, 전염병등으로 사망한 경우는 응답기피도 상당히 많으니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베) 상주자가 타지역(친척 방문중, 여행중, 병원)에 가서 사망하는 경우도 상주개념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세) 전입가구의 경우 전입이전 거주지에서 사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되어야 한다. 전출가구의 경우, 사망이 그 조사구내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사망과 가구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하지 않는다

(애) 조사대상 말일(20일) 이전에 실사를 나갔을 때는 다음달 조사때 누락기간동안에 일어난 변동상황 즉 사망이나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 사망(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예 :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다면 18,19,20일분을 다음달에 꼭 보완할 것)

(2) 기입사항

③ 사망자 이름

사망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경우에는 “애기”로 기입한다.

④ 가구원번호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성 별

사망자의 성별에 따라 남 혹은 여에 ○표한다.

⑥ 생년월일

사망자의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할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양력으로 환산하여 기입해야 한다.

⑦ 사망년월일

호적에 신고한 일자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사망한 일자를 양력으로 기입한다. 음력으로 대답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양음력 환산표”에 의거 반드시 양력으로 환산해서 기입해야 한다.

⑧ 사망자의 교육정도

㉠ 출생 ㉡ 모의 교육정도란 기입방법참조 : 5세 미만인 자의 사망은 이 난에 사선「/」을 친다.

⑨ 직 업

사망자가 사망직전까지 종사하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직업란 참조) 사망자의 직업변동이 심할 때는 인생중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입한다. 14세 미만인 자는 사선「/」을 치고 학생은 학생, 군인은 군인으로 기입한다.

⑩ 혼인상태

사망당시 혼인상태를 유배우, 미혼, 사별, 이혼등으로 기입한다.

⑪ 사망진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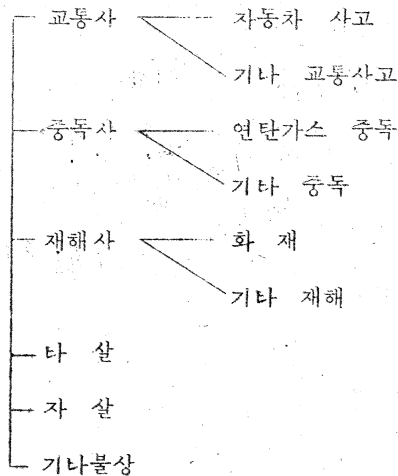
사망확인, 사망진단서의 작성, 검안서작성등의 역할을 한 사람을 말하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 3. 기타 "에 ○으로 표시한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라도 의사가 사망확인을 했으면 1. 의사에 해당한다.

⑫ 사망원인

인구동태 사망원인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모르는 응답자가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사 기입한다.

사망의 종류

- 병 사
- 의인사 (外因死)



○ 기타 및 불상

1. 병사

각종 질병으로 인한 사망(외인없이 노쇠로 인한 사망은 병사임)

2. 외인사

병사가 아닌 외적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통사고

사람이나 물건을 한장소에서 다른장소로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등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를 말하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자동차사고

충돌이나 비충돌에 관계없이 자동차(버스, 택시, 고속버스, 트럭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자동차와의 충돌, 기타 물체와의 충돌, 고속도로에서의 추락, 승강시의 비충돌성 사고, 조종력상실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졸음, 섯맹등)등

나) 기타 교통사고

철도, 선박, 항공기등에 의한 사고를 말함.

예) 철도차량충돌, 탈선, 열차에서 추락, 선박침몰에 의한 사고, 높이가 다른 선박으로 이동할때 부주의로 인한 추락, 이착륙시 동력 항공기사고, 우주선 사고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분류하지 않는다.

- 자동차 스포츠 사고→재해사
- 산업시설 구역내에서 전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장비의 차량에 관련된 사고→재해사
-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사고→재해사
- 운행정지중인 운송장비 또는 차량의 유지 또는 수선 중의 사고→기타 및 불상(不詳)

2) 중독사

각종약물, 가스, 음식물중독에 의한 사망을 말하며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연탄가스 중독

나) 기타 중독

예) 부적합한 약물 또는 과오 및 부주의에 의한 약물투입
약품사용에서의 불의의 사고, 유독 동식물에 의한 불의의
중독, 유독가스(유황가스, 암모니아가스 등)에 의한 중독등
단, 다음의 경우는 중독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투입된 을
바른 약물이 부작용의 원인이 될 때
- 자살이나 타살을 의도로 또는 손상을 입히기 위하여
각종 약물, 가스, 음식물을 투여했을 때

3) 재해사

각종 천재지변 및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다

음과 같이 두가지로 분류한다.

가) 화재

폭발,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나) 기타 재해

(예) 폭설, 폭풍우 및 지각동요로 인한 사고, 계단 및 승강기에서의 추락, 불의의 익사, 불의의 재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건축현장에서 추락 등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재해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 유독성 동식물 및 곤충에 의한 중독 또는 독성작용에 의한 사고

4) 타 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든 타인에 의하여 상해 또는 살해를 목적으로 가해진 상해(예: 손, 발, 주먹등의 폭력, 총기 및 폭발물에 의한 가해, 약물, 약제중독에 의한 가해, 상해 또는 살해목적의 소아의 유기, 살해목적의 화상, 타인에 의해 고의적으로 받은 상해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후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단, 다음의 경우에는 타살로 분류하지 않는다.

○ 법적개입에 의한 상해-경찰 또는 근무집행중인 자를 포함한 기타 법률집행자가 법률위반자를 체포 또 체포하려는 시도중 소란진압, 질서유지 및 기타 법률집행중에 입힌 상해→의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전쟁 및 폭동기간중 발생한 군인 및 시민의 상해, 정전후 발생한 전쟁행위에 기인한 상해

5) 자살 및 자상

자살 및 자상의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자의에 의한 사망(예 : 고체 및 액체물질에 의한 자살 및 자의중독, 기타 및 상세불명의 방법에 의한 자살 및 자상, 자살 또는 자상의 시도후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후에 후유증으로 사망되는 경우)

6) 외인사중 기타 및 불상(不詳)

상기 5종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외적인 요인으로 사망된 것이 사실이나 명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

3. 기타 및 불상

병사 및 외인사도 아니며 사망원인이 전혀 불명인 경우

다. 혼인

혼인은 상주개념에 의거 조사당시 그 조사구내에 살고있는 사람의 혼인을 말하며 혼인한후 따로 떨어져 있거나(별거와 구별됨) 혼인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단 혼인했으면 모두 조사대상이 되며 혼인식을 올린 장소는 분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혼인이라 함은 혼인식을 올린것 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사실혼(동거)에 대해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혼인의 조사대상은 출생과 같으나 출생은 대부분이 상주가구원에 의한 것이나 혼인은 그 성질상 대부분이 전입가구에

의한 것임. (혼인과동시 전입) 혼인은 조사대상이 전과는 전혀 달라 조사원이 혼동하기 쉬우므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때까지 지침서를 여러번 읽고 그래도 이해가 안될때는 교육기간중이나 지도원에게 몇번이라도 설명을 요구하여 완전히 이해하여야 한다.

(1) 유의사항

(가) 전입한 가구(월)의 경우 혼인이 전입전 거주지에서 발생한 것이라도 그 혼인이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것이면 조사한다.

(나) 전출한 가구(월)의 경우 혼인이 조사구내에서 발생했다하더라도 당해 혼인과 전출이 같은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가구(월)가 매월의 실사기간중에 있었을 경우 조사대상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있었던 혼인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조사대상기간 말일(20일)이전에 조사원이 조사구를 방문하였을때는 다음달에 누락기간을 꼭 보완하도록 할 것.

(예 : 4,5,7,10월의 경우는 20일이전에 조사구를 방문할 것임. 만약 17일에 실사를 나갔다면 다음달에 18,19,20일에 해당하는 변동을 꼭 보완할 것. 18,19,20일에 발생된 혼인이나 18,19,20일에 전입한 가구의 전입전 거주지에서의 혼인(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될 경우)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기입사항

전에는 부처 중 어느한쪽만 가구원번호를 기입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양쪽다 기입하여야 한다. 단, 혼인 한후에 부처 중 어느한쪽이 조사구내에서 같이 살지않는 경우에는 가구원번호를 한쪽만 기입한다.

③ 이 름

부(夫)의 이름을 기입한다.

④ 가구원번호

부(夫)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⑤ 연 령

부(夫)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물어서 기입하면 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원이 직접 환산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환산방법은 1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연령”과 같다.

⑥ 교육정도

부(夫)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⑦ 이 름

처(妻)의 이름을 기입한다.

⑧ 가구원번호

처(妻)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한다.

⑨ 연 령

처(妻)의 실제나이를 만나이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환산방법은 ㉠출생에서 “출산당시 모의연령”과 같다.

⑩ 교육정도

처(妻)의 교육정도를 기입한다.

라. 이 혼

① 조사대상은 혼인과 동일하므로 ㉢혼인을 참조

② ㉦생존자녀수는 그 부부가 이혼할 당시 동거했던 자녀를 말한다. 즉 재혼한 경우 전남편(전처)소생을 두고 왔을때 그 아이들은 생존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혼인년월은 가구표상의 초혼년월이 아니고 실제 이 부부가 결혼한 날짜를 말한다. (이 난은 해당부부의 실제 결혼기간을 알아보기 위한 것임)

3. 조사표류의 검토 및 제출

가. 조사표류의 검토

(1) 가구표

(가) 각 항목마다 기입상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나) 생년월일이 양력으로 환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다) 생년월일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 만 15세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라) 모의연령과 첫째자녀와의 생년월일을 대조하여 연령차이가 만 15세미만일 경우 재확인한다.

(마) 생년월일과 학력을 비교하여 맞게 기재되어 있는가 확인하고

중 2년제, 국 3년제 등과 같이 몇년제학 및 중퇴생 제적으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배) 각 자녀들간의 터울은 적어도 10개월이상이어야 한다.

(새) 배우편제가 "미혼"이 아닐경우 반드시 초혼년월이 기재되어야 한다.

(아) 부처간의 나이차이가 심할때는 재혼여부를 확인하고 재혼일 부처의 초혼년월은 각기 달라야 한다.

(재) 조사시점과 초혼년월을 대조하여보고 어린아이가 없는 경우 임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2인이하) 마지막 자녀이후 1년이상 경과했을때는 임신 여부 및 출산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2) 변동보고서

(가) 「③현황」에서 전월란의 숫자가 전월변동보고서상의 금월 가구수 및 인구수와 일치하는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나) 「③현황」란의 기입이 맞게 되어 있는가 재확인한다.

(전월+증가-감소=금월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틀린경우가 있음)

(다) ①②③④⑤⑥⑦란의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없는가 확인한다.

(라) 「①가구증가」 「②가구감소」 「③가구원증가」 「④가구원감소」란에서 실제 기입된 내용과 맨 윗상단에 합계된 숫자가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바) 「①가구종가」 및 「②가구감소」의 경우 가구표상의 가구번호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번호가 일치하는가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표상의 가구원수와 변동보고서상의 가구원수도 일치하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삐) 「⑦임신기록 및 결과」란은 모든 임신부인과 임신이 끝난 부인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하는바 꼭 확인하여야 한다.

(출생조사표가 제출되면 이란은 꼭 기록되어야 함)

(3) 조사표

(가) ①②③④ 각 항목마다 기입누락 및 오기가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나) ①출생에서 ④모의 가구원번호가 가구표상의 가구원번호와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가끔 출생아의 가구원번호를 기입하는 사례가 있음)

(다) ②사망에서 사망자의 생년월일과 사망년월일을 모두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니 바르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금년부터 사망자의 생년월일만이 추가되었음)

(라) ③혼인에서 부처양쪽다 반드시 가구원번호가 기입되어야 한다. 단, 예외의 경우에는 (부처가 같은 조사구에 살지 않을 때) 어느 한쪽만 기입해도 된다.

(마) ④이혼에서 ⑧혼인년월은 두사람이 결혼한 날짜를 말함. 특히 재혼한 부부의 경우 가구표상의 초혼년월과는 구별되어

야 함. (동일하게 기입되었는가 확인해야 한다)

(바) 생존자녀수는 두사람이 이혼할 당시 같이 살았던 자녀수를 기입해야 하므로 가구표와 대조하여 가구표상의 자녀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조사표류의 제출

(1) 제출상의 유의점

- (가) 인구동태표본조사표는 표지가 없으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철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제출할 조사표류중에 빠진 것이 없는가를 재확인한다.
- (다) 지정된 기일내에 조사표를 제출토록 한다.

(2) 제출할 조사표류

- (가) 인구동태 표본조사표 1부
- (나) 변동보고서 (3부작성하여 중앙에 1부)
- (다) 가구표 (" ")

(3) 제출기일

사무소장은 익월 5일까지 중앙에 도착하도록 제출한다.